

제264회 임시회

2007. 10. 22(월)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 일 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10월 8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3. 제안이유

가.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조례와 규칙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팀제 운영에 맞게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을 개선

나. 상위법령에 의거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자격 보완(안 제8조제2항제4호)

○ 타 위원회 위원 자격조건과 형평성을 고려, 자격조건 보완

나. 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 개선(안 제8조제5항)

- 팀제 운영에 맞게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 지사가 지명하도록 개선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조직 구성조건 명시
(안 제9조제5항)

○ 관련법령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종전에는 도세 부과징수 규칙에 명시되어 있었음

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각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을 팀제 운영에 맞도록 조정하며,

인용법령에 대한 낫표(「) 사용 등 2007년 8월 10일 조례 제3018호로 제정된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사유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